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80호 2026. 1. 19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6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9일

예 천 군

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안 제8조)

-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감면,
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 감면

나.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(안 제10조)

○ 보통세를 우선 공제,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cge0144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재무과

3) 팩스 : 054-650-6871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(전화 : 054-650-687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 100분의 50으로”를 “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,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”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<u>100분의 50</u> 으로 한다.	제8조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<u>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,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</u> ---.
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<u>다음과 같다.</u> 1. 2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<u>순서</u> 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,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	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와</u>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순위</u>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</u> 2. <u>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</u>